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55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5547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593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593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순천시 D 임야 1256㎡ 중 C의 지분 1,900/46,810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순천시 D 임야 1256㎡ 중 C의 지분 1,900/46,8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0. 11. 접수 제39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여를 하면서 동시에 향후 되돌려 받기 위해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C의 재산에 증감변동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이 2017. 10. 11.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는 C의 적극재산이 되는 것이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C의 재산상태가 변동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